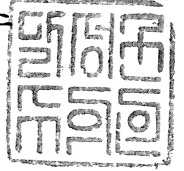


2022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

의안 번호	2008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11. 9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관련,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활용 의무화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융자 차입하여 지방채로 조달하고자,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4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「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」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방채 발행계획
 - 발 행 액 : 11.5억원 (일반회계)
 - ※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 지원액(11,500백만원)의 10%
 - 발행사업 : 도시재생뉴딜사업(1000년의 화원, 다시꽃피다)
 - 발행용도 : 거점시설 지역공동체공간 ‘소통·봄꿈’ 조성
 - 차 입 선 : 주택도시보증공사 (주택도시기금)
 - 상환조건 : 13년 만기 일시상환
 - 이 율 : 연 1.8%
 - 발행시기 : 2022년도
- 지방채 상환계획
 - 도시재생뉴딜사업 종료에 맞추어 중도 조기상환 추진

3. 지방채 발행계획 명세(안)

(단위: 억 원, %)

부서명	사 업 명	발행액	자금선 (차입선)	발행조건			비고
				이율	상환조건	상환 재원	
도시과	도시재생뉴딜사업 (1000년의 화원, 다시꽃피다)	11.5	주택도시기금 (주택도시보증공사)	1.8	13년 만기 일시상환	군비	한도내

※ 구체적인 발행 조건은 기금융자 시기에 맞추어 변동가능

※ 붙임 1.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

붙임 2. 관계법령

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(1,000년의 화원, 다시 꽃피다)

대구교도소 후적지 주변 노후 원도심을 대상으로 약화된 공동체 기반, 열악한 공공복지 서비스 환경, 쇠퇴한 상권 및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20년 ~ 2023년(4년간)
- 사업위치: 화원읍 천내리 일원(대구교도소 후적지 주변)
- 사업량: 도시재생 뉴딜사업(일반근린형) 150,669㎡
- 총사업비: 241.5억 원(국 115, 시 57.5, 군 57.5, HUG기금융자(채) 11.5)
- 사업내용
 -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(주민 커뮤니티 교류 공간 및 예술놀이 오픈 캠퍼스 ‘소통·봄꿈’)
 - 공공 복지 서비스 활성화(상상 어울림센터 ‘비상’, 실버 커뮤니티 ‘나들이’)
 - 골목상권 활성화 및 생활 인프라 개선(주차장 조성) 등

□ 지방채 발행 필요성

-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(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) 공모선정 관련, 국비지원액의 10% 이상 금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(이하 HUG) 기금 활용이 의무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(공모선정조건)

□ 추진 상황

- 2019. 10. : 도시재생 뉴딜사업(일반근린형) 공모 선정
- 2020. 2. : 실버 커뮤니티 공간 부지매입(6.94억원)
- 2020. 8. :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
- 2020. 9. :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부지매입(19.6억원)
- 2021. 1. ~ : 각 사업별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중
- 2021. 5. : 주차장 부지매입(20.9억원)

□ 향후 계획

시설명	지역공동체공간 “소통·봄꿈”	상상어울림센터 “비 상”	실버커뮤니티 “나들이”
위 치	화원읍 천내리 441-3번지 외 1필지	화원읍 천내리 860-2번지 외 1필지	화원읍 천내리 851번지
규 모	대 지 면 적 : 637㎡ 건축연면적: 1,210㎡ (지하 1층, 지상 4층)	대 지 면 적 : 935㎡ 건축연면적: 2,800㎡ (지하 1층, 지상 5층) ※ 지하주차장(800㎡) 조성	대 지 면 적 : 328㎡ 건축연면적: 553㎡ (지상 4층)
일 정	21. 3: 공공건축 사전검토 21. 6: 공공건축 심의 21. 8: 설계공모 21. 11: 실시설계 용역 22. 6: 공사 착공 23. 6: 공사 준공	20. 11: 공공건축 사전검토 21. 9: 공공건축 심의 21. 11: 설계공모 22. 1: 실시설계 용역 22. 10: 공사 착공 23. 11: 공사 준공	21. 1: 공공건축 심의 21. 2: 실시설계 용역 22. 1: 공사 착공 23. 1: 공사 준공

□ 지방채발행계획(안)

(단위: 억원, %)

발 행 액	차 입 선	연리	상환기간	상환재원	발행방법	발행시기
11.5	주택도시기금(도시계정) (주택도시보증공사)	1.8	13년 만기일시상환 (중도상환가능)	군비	증서차입	2022. 상반기.

□ 위치도 및 계획도

○ 위치도



○ 계획도

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4조(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1조(지방채의 발행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. <개정 2014. 5. 28., 2015. 5. 13.>
 1.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
 2.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
 3.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
 4. 지방채의 차환
 5.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
 6. 명예퇴직(「교육공무원법」 제36조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

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다만,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,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5. 28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1. 29.>

- ④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5. 28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.

□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

제11조(지방채발행의 절차)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일까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을 포함한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0. 4. 28.>
-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정하여 7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 <신설 2020. 4. 28.>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산정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4. 28.>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채를 발행하거나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(이하 “지방자치단체조합”이라 한다)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

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. <개정 2020. 4. 28.>
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. 다만,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다음 연도의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. <신설 2020. 4. 28.>
- ⑥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20. 4. 28.>
-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관서(「국가재정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 결과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·통보해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4. 11. 28., 2017. 7. 26., 2020. 4. 28.>
-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 4. 28.>

제12조(지방채인수의 절차)

- 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, 청사정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시·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등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4. 11. 28., 2017. 7. 26.>
- ③ 시·군 및 자치구가 다음 연도에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